

## Review

국제사회 힘의 변화와 해양레짐 출현에 관한 소고  
-유엔 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강 량\* · 박성욱 · 양희철

한국해양연구원 정책연구실  
(425-600)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29호

The Emergence of International Ocean Regime and the Change  
of Power Concept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Case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Ryang Kang\*, Seong Wook Park, and Hee Cheol Yang

Policy Research Division, KORDI  
Ansan P.O. Box 29, Seoul 425-600, Korea

**Abstract :** As the political arguments on international power concept has gradually been deepened, the role of international regimes, defined as principles, norms, rule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around which nation-actors' expectations converge in a given issue-area, has also been reinforced. There are many ways of understanding about international regimes. In terms of realistic theories, international regimes are one of methods of maintaining hegemonic power order of hegemonic nation and in terms of liberalistic theories, international regimes are understood as the products of mutual inter-dependence of nations in changing international society. As a matter of fact, if we take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into severe consideration, we can find not a few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regimes, such as security regime, world trade and finance regime, ocean regime, environmental regime, human right regime, etc.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hanging concept of power after World War II in three categories of hard power (military power), meta power (regime creating power), and soft power (advanced in cultural, diplomatical, and technological power). This paper will provide the evidence of why the changing power concepts will be strongly related with the emergence of international regimes.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ill be chosen as a standard case of the ocean regime and its regime structure and role will also be analysed in both realistic and liberalistic theories. Furthermore, the nations' interests involv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ill be analytically classified and finally a future prospectu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s an ocean regime will be tested.

**Key words :** hegemonic nation, inter-dependence, hard power, meta power, soft power, realistic theory, liberalistic theory,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Exclusive Economic Zone, continental shelf

## 1. 서 론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하에 형성된 국제 정치경제질서는 정치적으로는 소련과의 양극체제 대립 속에서, 경

제적으로는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체제<sup>1)</sup>하의 배타적 지역주의와 일방적인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해 형성되어졌다.

베트남전쟁의 장기화와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로 패권국으로서의 미국 위상이 흔들리고,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효율적으로 다루기 힘든 전지구적 문제들, 예를 들어

\*Corresponding author. E-mail : rkang@kordi.re.kr

지구환경문제, 해양문제, 자원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개별 국가 간 상호의존의 심화가 오히려 국가 간 선택의 폭을 좁히는 형태로도 나타나고, 보다 다원적 차원에서 국가 간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권위체(political authority)와 통치(governance)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런 현실적 필요의 맥락에서 소위, 국제레짐 이론이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은 중앙정부에 의해 다스려지는 계급적 구조의 국내정치와는 다른 일종의 무정부적 속성을 갖는 국제체계(international system)내에서, 국제적 행위가 어떻게 조절 또는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나아가 기존의 국가 간 협력과 관련된 국제제도(international institution)나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s)들을 포괄하면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들에 대해 국제제도와 국제기구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sup>2)</sup> 반면,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국제레짐은 패권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패권유지의 도구로 사용되어 지며 패권국에 의해 창출, 유지되거나 패권국의 소멸과 함께 같이 소멸되는 존재로 이해되어 지고 있다.<sup>3)</sup>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국제레짐의 창출이야말로 전후 국제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야기된 한 파생물로 보고, 이와 함께 이런 여러 변화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변수으로써 국제사회 힘(권력)의 변화를 선택하고자 한다. 나아가 힘(권력)의 변화와 함께 창출된 국제레짐의 개념을 현실주의 및 자유주의적 국제레짐 시각에서 정리해

보고 대표적인 국제레짐의 유형으로 대변되는 자발형(spontaneous), 협의형(negotiated), 강요형(imposed) 국제레짐에 대한 설명<sup>4)</sup>과 함께, 1982년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에서 서명된 유엔해양법협약 사례가 갖는 해양레짐(ocean regime)으로서의 특수성을 국제레짐 이론에 접목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해양법협약이 1994년 이미 발효하였음에도 일련의 주제를 둘러싸고는 여전히 국가간 협상을 통한 해석과 새로운 방향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레짐이론을 통한 해양법의 발전 전후를 논의할 실익은 여전히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현실적 이해는 또한 어떻게 노정되어 졌는가를 살펴봄<sup>5)</sup> 해양레짐으로써의 유엔해양법협약의 현실적 적용에 대한 가설적 전망을 노정해 본다.

## 2. 국제사회와 힘(권력) 관계의 변화

베트남전쟁의 결과는 국제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에게 통상적인 군사력으로서의 권력과 이에 따른 정치적 결과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인지하게끔 만들었다. 군사력이야말로 궁극적인 권력의 기초이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이 원하는 모든 요구조건들을 수렴하도록 만드는 데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고 생각해왔던 전통적 힘의 개념에 차질이 생겼으며, 이는 몇몇 사례에서 증명되기도 했다.<sup>6)</sup>

먼저 국제사회에서 힘(권력)의 결과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군사력과 같은 권력을 강성권력(hard power)으로, 경제

<sup>1)</sup>브레튼 우즈체제란 2차대전 후 미국의 대서방 경제지원 프로그램으로 달러의 금태환체에 입각한 대 서방 경제지원 정책을 말한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전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해 주는 삼두마차로 미-일동맹관계, IMF, 그리고 GATT체제를 예로 들고 있다.

<sup>2)</sup>국제레짐, 국제제도, 국제기구 사이에서 어떤 것이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상위 개념인가를 놓고 학자간 의견이 분분하다. 코헤인(R.O. Keohane)의 경우 국제제도는 국제기구와 규칙, 규범을 정하는 합의된 절차로서의 국제레짐 그리고 국제관습을 포함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러기(John Ruggie)의 경우는 국제레짐이 국제기구와 국제제도를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이라고 본다. 자세한 내용은 (Keohane 1989, 4-5) 참조. 그리고 (Keohane 1986, 568) 참조.

<sup>3)</sup>자세한 내용은 (Nye, Jr. 1988, 235-251) 참조.

<sup>4)</sup>레짐형성의 서로 다른 배경과 과정들을 통해 서로 상이한 협력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오란 영(Oran Young)은 이를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로, 자발형 레짐은 계획에 따른 산물이 아니라 다수 행위자들의 자연스런 행위의 결과로 인해 형성되는 레짐을 말하고 둘째로, 협상형 레짐은 주요 규정들에 대한 합의도출과 이에 따른 개별행위자들의 개별적 동의 그리고 합의된 결과의 공식적 표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특징을 가진 레짐이며 이런 협상형 레짐은 레짐 속의 행위자들이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 헌법적(Constitutional) 계약형 레짐의 형태와 레짐에 속한 행위자들이 직접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이들의 이해가 소수의 협상참여자들에 의해서 대표되는 입법적(Legislative) 협상형 레짐으로 구분되어 진다. 셋째로, 강요형 레짐은 지배세력단 또는 지배행위자의 권소시업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조작된 레짐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Young 1989, 84-89) 참조.

<sup>5)</sup>각주 2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제레짐과 국제기구, 국제제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국제 레짐이론의 설명범위를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패권안정이론에 한정하고자 한다.

<sup>6)</sup>초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해 자국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무능한 존재로 격하된 사례는 미국과 베트남전쟁, 프랑스와 알제리 전쟁,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결과에서 나타나며 그 결과 강대국의 응징을 기꺼이 감내하고자 하는 정신적 요소가 또 다른 국력의 한 요소로 평가되어 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Stossinger 1973, 7-27) 참조.

력,<sup>7)</sup> 협상력, 문화적 능력, 외교력, 역사와 전통에 대한 긍지 등과 같은 비군사적인 권력을 연성권력(soft power)으로 구분하고<sup>8)</sup> 국제사회 내 레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국제레짐을 재해석하거나 사전에 변동시켜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쟁점을 원초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력을 메타권력<sup>9)</sup>(meta power)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2차 대전 후 국제사회에서 나타난 힘(권력)의 변화추이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요약해 볼 수 있다.<sup>10)</sup>

### 강성권력(hard power)

미-소간 냉전 대립 속에서 각 블록 간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고,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며, 전략지역 보호, 주요 경제보급로 및 자원 확보에 대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는 군사적 위협, 시위 및 사용이었다. 블록 내 세력유지를 위해 미-소 양국은 자국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도전도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물리적 군사력의 사용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양태는 소련의 헝가리, 폴란드, 체코에서의 군사진압, 미국의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군사작전 등에서 여실히 반영되어 졌다.<sup>11)</sup> 이런 미-소의 군사적, 이념적 대립관계는 국제기구로서의 UN 역할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sup>12)</sup> 미-소 양 블록을 중심으로 벌어진 지역 간, 이념 간 대립의 극대화는 지시적 혹은 명령적 형태의 권력행사 도구로써 물리적 군사력이 자주 사용되어 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였다.

### 메타권력(국제레짐 창출, 유지 능력)

국제사회의 데탕트무드,<sup>13)</sup>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의 증대, 초국가적 형태로 나타나는 국제기구의 활성화

등은 가장 효율적인 권력행사의 기초 도구로 사용되어 왔던 물리적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즉각적인 문제해결의 도구로서 흔히 사용되어 온 물리적 군사력이 국제사회의 문제들을 원활히 해결하기 보다는 더 많은 비용부담과 문제의 악화를 가져다주는 주요인이 된 것이다. 이런 변화의 기저에는 첫째로, 인류 공멸을 야기할 수 있는 핵무기의 확산과 대규모 전쟁으로의 확진 가능성, 둘째로, 민족주의로 무장한 수많은 신생독립국들의 탄생과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활성화, 셋째로, 잘못될 경우, 국가의 운명까지 위태로워 질수 있는 국가 간의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 넷째로, 정부의 정치적 선동, 선전, 음모에도 속지 않고 무력행사를 반대하는 선진국의 계몽된 시민집단의 확산과 비정부간 국제기구(INGO)의 급증<sup>14)</sup>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간의 권력사용 영역도 문제의 쟁점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 간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시장점유율, 고도의 첨단 기술,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 여부, 대외협상 능력 등과 같이 특정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을 소지하고 있는 국가가 보다 우세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의 영역에 따라 적절한 권력 자원이 어떻게 실질적인 권력으로 전환되어지는가 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동원과 조작, 거래와 흥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상호 동질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국가 또는 단체들이 국제레짐을 형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권력자원의 실질적인 권력으로의 전환을 꾀하게 되었으며,<sup>15)</sup> 이와 함께 개별국가가 다루기 힘든 환경, 해양, 인권과 같은 전지구적 문제들과 국가 간 상호의존의 심화로 초래되는 개별국가 간 정책조정 문제들이 국제관계 전반

<sup>7)</sup>에일다학의 달 (Robert Dahl) 교수를 포함하여 일부 학자들은 위협요소로서의 경제력을 강성권력 안에 두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시장지배, 무역, 통상, 금융 등 일반적 경제활동 개념으로서의 경제력으로 한계를 정한다.

<sup>8)</sup>권력의 개념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ye Jr. 1990) 참고.

<sup>9)</sup>메타권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rasner 1983, 1-22) 참고.

<sup>10)</sup>나이(Joseph Nye)는 군사력 사용에 따른 엄청난 비용의 증가 문제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 군사력 사용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감소된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핵위협, 반전여론, 각종 압력단체를 비롯한 사회세력들로 인한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정부적 국제사회 내에서는 언제라도 국익실현의 한 방향으로 물리적 강제력이 여전히 동원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본다.

<sup>11)</sup>1953년 폴란드의 반소운동, 1956년 헝가리의 반소 체제운동, 1968년 소위 프라하의 봄으로 알려진 체코의 민주화 개혁 운동 등을 소련은 군을 투입해 무력진압 했고, 미국의 경우 1954년 과테말라 아르벤즈 정권 전복, 1961년 쿠바 피그만 침공, 1965년 도미니카공화국 내정개입, 1973년 칠레 아옌데 정권 전복 등에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sup>12)</sup>2차 대전 후 1965년까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써 미국과 소련이 사용한 비토권의 횟수는 소련의 경우 400회가 넘으며 미국의 경우 200회가 넘는다. 이로써 평화유지 및 집단 안보체제로서의 UN역할은 극도로 위축되어 질 수 밖에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박 1998, 1-592)

<sup>13)</sup>미-소 냉전체제에서 화해무드로 접어든 국제사회 상황을 말하며, 특히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모스크바, 베이징 방문 후 이뤄진 공산주의 중주국과의 화해 및 공존 시도를 데탕트(detente) 상황으로 일컫는다.

<sup>14)</sup>80년대 들어서면서 약 1000여개의 INGO가 UN으로부터 협의적 지위를 획득했고 UN을 중심으로 국제평화와 안보, 인권, 환경, 해양 문제 등이 국제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에 의해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 자세한 내용은 (박 1998, 322-325) 참조.

<sup>15)</sup>자세한 내용은 (Baldwin 1979, 161-194) 참조.

을 규정할 수 있는 국제레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권위체 형성과 이의 지배체제(political governance)를 가속화시켰던 것이다.<sup>16)</sup>

국제사회 내 다수 행위자<sup>17)</sup>의 자연스런 이익추구의 결과로 형성되는 자발형 국제레짐(spontaneous international regime)과 특정의제를 위한 합의 도출 결과 형성된 협상형 국제레짐(negotiated international regime) 등은 대체적으로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배적 행위자들의 컨소시엄에 의해 강제로 형성된 강요형 국제레짐(imposed international regime)은 몇몇 개별국가만을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때로는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sup>18)</sup> 이런 상황에서 크라스너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제레짐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또는 운영되고 있는 국제레짐 자체를 재해석해서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쟁점들을 의제에서 원초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메타권력(meta power)으로 정의하고, 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동시대가 요구하는 효율적인 국가권력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보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유형을 강조하게 되었다.<sup>19)</sup>

#### 연성권력(soft power)

크라스너(Stephan Krasner)의 메타권력과는 별도로 나이(Joseph Nye)는 권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중요성이 점차 유형의 자원(tangible resources)에서 무형의 자원(intangible resources)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탈냉전시대의 다변하는 국제사회에서는 다른 국가로 하여금 자국의 행동과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명령적인 권력행사보다는 다른 국가들 스스로가 자국의 체제에 동의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간접적인 형태의 권력 또는 포섭적 권력(co-optive power)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포

섭적 권력은 자국이 원하는 바를 지시하거나 강제하는 종류의 권력과는 달리 자국의 매력적인 아이디어로 타국이 선호하는 바를 구체화시켜 자국을 통해 정치적 의제로 이를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이런 포섭적 권력은 한 국가의 문화력, 이념관, 시장지배 능력, 협상력, 외교력, 역사와 전통에 대한 긍지 등과 같은 무형의 권력자원과 관련을 맺고 있다.<sup>20)</sup>

나이는 이를 군사력과 같은 강성권력과 구별하여 연성권력이라고 칭하며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가 타국가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자국에 유리한 규칙과 제도를 수립할 능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권력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sup>21)</sup>

어떻게 보면 나이의 연성권력은 의제 설정과정을 통해 함으로써 정책결정의 맥락을 규정한다는 크라스너의 메타권력 개념과 유사한 면도 있지만, 현실에 적용해 보면 이 보다는 훨씬 비강제적이고 합의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연성권력은 메타권력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타국의 이익과 선호를 자국의 이익과 선호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타국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협상결과를 통제하는 권력인 것이다. 메타권력이 불평등한 국제레짐으로 인해 약소국은 레짐내에서 의제 상정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데 반해, 연성권력은 약소국으로 하여금 강대국의 선호를 마치 자신의 선호처럼 받아들여, 이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게 만드는 힘(권력)의 유형인 것이다.

탈냉전시대 이후 나이의 연성권력이 강조되고 있는 저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기구 간 상호작용과 초국가적 형태의 민간협력체인 비정부간 국제기구(INGO)의 활동을 간과할 수 없다.<sup>22)</sup> 1990년대 이후 전문성, 투명성, 신속성으로 무장한 각종 국제민간단체들의 수가 2만여 개를 넘

<sup>16)</sup>푸차라(Donald Puchala)는 국제레짐을 정형화 된 행위(patterned behaviour)로 정의하고, 해거드(Stephan Haggard)는 특정영역에서 국가들의 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가들 간의 다변적 협정으로 정의한다. 국제레짐에 대한 대표적 정의로 크라스너(Stephen Krasner)는 국제관계의 특정영역에서 행위자의 기대하는 바가 수렴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정책결정절차 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Krasner 1983, 2) 참조.

<sup>17)</sup>국제사회 행위자의 주체는 자유주의 이론에서는 국가, 국제기구, 정부대표단, 국제기구 사무총장, 지식인공동체, 미디어종사자, 다국적기업 등 다양한 형태를 띠지만, 현실주의 이론에서는 단일 행위자로서의 국가다.

<sup>18)</sup>현실주의적 관점의 패권안정이론가들은 미국의 패권이 쇠퇴함에 따라 미국을 대신해 미국의 패권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국제레짐들이 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sup>19)</sup>자세한 내용은 (Krasner 1983, 1-29) 참조.

<sup>20)</sup>콕스(Robert W. Cox)는 과거 역사에서도 포섭적 권력의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19세기 영국의 팩스 브리타니카(Pax Britannica)나 20세기 미국의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가 효과적일 수 있었던 것은 자유주의 규칙과 체도가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창출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Cox, 1987, 134-145) 참조.

<sup>21)</sup>자세한 내용은 (Nye, Jr. 1990, 23-45) 참조.

<sup>22)</sup>전문성으로 무장한 비정부간 국제기구(INGO)들은 지구촌적 문제들, 예를 들어 환경, 인권, 해양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통상, 무역 등의 경제적 문제, 집단안보, 군축과 관련된 군사적 문제들, 나아가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개혁문제에도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어졌고, 이들은 UN을 비롯한 정부 간 국제기구들 뿐 만 아니라 개별국가의 정책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 이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국제레짐이 만들어 지기도 하고<sup>23)</sup> 기존의 국제레짐 성격이 변화하거나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sup>24)</sup>

국가 간 상호의존을 넘어 정부간(IGO) 또는 비정부간 국제기구(INGO)를 중심으로 하는 초국가(transnational) 형태의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가면 갈수록, 국제사회의 권력 유형도 강압의 정도가 점점 적어지고 대신에 정보, 경제, 국제기구, 국제제도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국제레짐의 역할과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권력의 원천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특정한 의제, 예를 들어 환경, 해양, 인권, 자원 등을 위해 형성된 국제레짐의 생성동기와 성격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내에서 변화해 온 권력의 속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레짐에 참여하는 개별국가의 정책적 이해들 또한, 이런 시각 속에서 나름대로의 특수성들이 분석되어 질 수 있다고 본다.

### 3. 국제레짐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시각

#### 국제레짐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

국제레짐을 보는 현실주의적 시각은 대체로 국가 간에 상호작용하는 국제제도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국제사회 내에서 어떤 형태의 집단적인 결과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존재로 본다. 단지 국제레짐은 권력의 단순한 반영물로서, 권력의 변화에 따라 같이 변화하는 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한 부분으로 본다. 따라서 현실주의는 권력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국제체제의 구조(international structural system)가 국가 간 협력을 창출해 낸다고 보고 있다.<sup>25)</sup> 국제사회는 국가 간 이익이 상충하고 있는 장이며, 자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이 국가 간의 공동이익(common interest)을 항상 지배하기 때문에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와 함께 주권국가는 국제사회의 공공선(common value)이란 명분으로 부과되는 어떠한 제약이나 규제에도 종속되지 않으며 항상 주권국의 자율성을 향유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제기구나 국제제도를 포괄하는 형태의 국제레짐은 자율성을 갖는 독립된 행위자가 될 수 없으며, 단지 이를 지배하고 운용하는 국가의 권력추구를 위한 도구역할을 할 뿐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레짐이란 무정부적 국제체계에서 규율을 부과할 수 있는 패권국가(hegemonic nation)에 의해 창출되어지고 운용되어 지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패권국가의 위치에 있는 나라는 미국이며, 미국은 전후 안보, 통화, 무역, 환경, 해양 전 분야에 걸쳐 국제레짐을 창출, 운용해 나가고 있다. 현실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 패권국의 지배 하에서 국제질서가 더욱 안정되었다는 예로써, 18, 19세기 영국과 2차 대전 후 미국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국제사회에 안정을 가져다주었으나, 패권국이 부재했던 1차, 2차 대전 시기에는 공황과 대혼란으로 국제사회가 극도로 혼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현실주의자들은 국제레짐 형성에 나서는 패권국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하나는 패권국의 경제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패턴이고, 또 다른 경우는 패권국의 강제력에 의존하는 패턴으로 보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패권국의 경제력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도 자국에 이익이 되는 공공재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오직 패권국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국제질서를 이용한다.<sup>26)</sup> 경제력 또는 강제력을 사용하던지 간에, 개방적인(open-ended) 국제질서 속에서 공공재를 사용하는 패권의 유지형태는 패권유지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며, 이에 기생하는 소국들의 무임승차(free ride)로 인해 패권국의 피로가 누적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실주의자들은 패권국이 스스로 나서서 자국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국제레짐의 형성을 방해하거나 이에 대적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레짐을 창출할 수도 있다고 본다.<sup>27)</sup>

<sup>23)</sup>비정부간 국제기구(INGO)가 만들어 낸 국제레짐으로 199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국제지뢰금지협약과 국제사면위원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등을 들 수 있다.

<sup>24)</sup>예를 들어 국제금융레짐으로 대표되는 IMF와 IBRD(World Bank)간 벌어들인 장기간에 걸친 권한 다툼은 국제민간단체로부터의 전문가 자문과 협력을 거쳐 IMF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국제금융문제 그리고 IBRD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국제금융문제로 나누어 정책 협력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sup>25)</sup>왈츠(Kenneth Waltz)의 경우 패권국가가 이끌고 나가는 국제체제의 구조가 국제질서를 규정한다는 패권안정이론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조는 개별국가에게 기회(opportunities)와 제약(restraints)을 동시에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동일한 국제구조 내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것과 제약이 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Waltz 1979, 123-157) 참조.

<sup>26)</sup>자세한 내용은 (McGrew and Lewis 1992, 128-137) 참조.

<sup>27)</sup>보글러(John Vogler)는 우주, 대기권, 해양의 쟁점영역에서 패권국가로서 미국이 국제레짐을 창설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존하는 제도를 견지하거나 제도의 변화를 피하는 새로운 제안을 입안 또는 저지하는데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McGrew and Lewis 1992, 128) 참조.

패권안정론자들이 언급하는 패권국의 주요 관심사는 다분히 국제무역레짐 또는 국제통상레짐 및 국제안보레짐 등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자주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마찰을 빚어내고 있는 국제환경레짐과 국제해양레짐 등은 패권국의 집중적 관리 분야가 아닌 일종의 협의의 대상 (consultative objection)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제 발원 자체에 제3세계 및 개도국의 이해가 다분히 반영되어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경우, 국제레짐을 이용한 패권국의 패권유지 차원의 현실주의적 시각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며, 앞서 언급한 회원국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형성된 일종의 자발형 국제레짐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 국제레짐에 대한 자유주의적 시각

국제레짐을 보는 자유주의적 시각은 국가 간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보며 국가 간의 협력과 갈등은 패권국이 형성하는 국제사회의 구조적 요인(structural factor)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 요인(situational factor)에 기인한다고 본다. 국제사회가 부정부적 상태를 특징으로 하는 자구의 체계이기 때문에<sup>28)</sup> 이로 인해 국가 간 발생하는 법적 책임관계, 거래비용, 정보의 유통 등과 같은 문제를 국제레짐을 형성함으로써 해소 또는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sup>29)</sup> 따라서 현실주의적 시각이 패권적 구조가 국제레짐을 공급한다는 일종의 공급자적 이론이라면, 자유주의적 시각은 국제사회의 구조와 상관없이 국가들의 필요에 의해 국제레짐이 생성된다는 일종의 수요자적 이론이라 일컬어 질 수 있다.<sup>30)</sup>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레짐이 4가지 이유로 국가 간 협력을 유도한다고 보고 있다. 첫째로, 국제레짐은 국가 간의 행동양식을 안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sup>31)</sup> 새로운 상황에 대한 서로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이며,<sup>32)</sup> 둘째로, 국제레짐은 국

가들에게 정확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여 국제사회내 불확실성을 줄여 국가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며,<sup>33)</sup> 셋째로 국제레짐의 원칙과 규범, 규칙 등은 국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행위의 폭을 줄여주고, 이로 인해 레짐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에 거래비용도 줄여주며,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이며,<sup>34)</sup> 넷째로, 국제레짐은 제한적인 힘을 가진 행위자에게도 힘을 실어 주며 강대국과 약소국간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약소국에 의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sup>35)</sup>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국제레짐은 국가 간 강압적인 협조관계 보다는 선의의 지도력에 의한 여타 국가들의 자발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이로 인해 국제레짐이 상대적으로 보다 튼튼한 제도화과정을 형성할 경우, 패권국의 존재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진 국제협력력을 위한 제도로서, 국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낼 수 있다고 본다.<sup>36)</sup>

이런 맥락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발전과정에 노정된 해양생태 및 환경면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의존의 증가, 해양 가치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지원, 전문성에 입각한 가치의 배분, 해양 권리에 대한 개도국들의 협상 능력 증대, 해양레짐 관련 규칙과 규범에 대한 법제화 노력, 다자간 협상을 통한 선의의 지도력 창출 노력, 유엔 산하 전문기구들과의 협력관계 증진 등을 고려해 볼 때, 국제레짐에 대한 자유주의적 시각이 해양레짐으로서의 유엔해양법협약을 분석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적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4.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레짐

##### 유엔 해양법협약 발전 추이

유엔의 해양법관련 회의 소집 및 이의 발전에 기여한 첫 번째 움직임은 2차 대전 종전 후, 1945년에 내려진 미

<sup>28)</sup>무정부적 성격의 국제사회에 대해서 (Waltz 1979, 132-175) 참조.

<sup>29)</sup>코헤인(Robert O. Keohane)은 시장실패이론이라는 가설로 국제레짐의 창설 당위성을 비유하고 있다. 즉, 국제사회라는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의 결모양과 엔진 및 부속품이 다른 영터리 자동차로 걸만 단장해 속여 파는 국가들로 인해 시장에 나온 자동차 질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서 국가 간 거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창출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사회 내 회원국들로부터 보다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일종의 명망가를 내세워 판매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명망가의 역할을 바로 국제레짐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박 1996, 413-493) 참조.

<sup>30)</sup>자세한 내용은 (Keohane 1984, 145-156) 참조.

<sup>31)</sup>자세한 내용은 (Young 1989, 223-232) 참조.

<sup>32)</sup>자세한 내용은 (Keohane and Nye Jr. 1977, 58-69) 참조.

<sup>33)</sup>자세한 내용은 (Snidal 1985, 579-614) 참조.

<sup>34)</sup>자세한 내용은 (Krasner 1983, 1-21) 참조.

<sup>35)</sup>이런 예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GATT)의 최혜국대우, 해양문제 해결과정, 기술이전 문제 관련 협상, 해양법에 의한 대륙붕 개발, 유엔을 주축으로 하는 해양법협약 등에 관련된 국제레짐들을 들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aggard and Sommons 1987, 491-517) 참조.

<sup>36)</sup>자세한 내용은 (박 1996, 234-245) 참조.

트루먼 대통령의 대륙붕 자원과 관련한 미국의 관할권과 통제권에 대한 일방적인 선언으로부터 볼 수 있다.<sup>37)</sup> 내용의 주요 핵심은 2차 대전으로 인한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식량자원의 고갈위험에 적절히 대처하고 이런 핵심 전략자원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근해 해상에 분포되어 있는 새로운 석유자원의 확보 필요성에 있었다. 그 결과 각국은 해양으로의 주권확장이라는 새로운 발상에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식민지개척에 기반을 두었던 서구제국들의 해양정책 근간인 해양자유의 원칙, 즉 좁은 영해와 넓은 자유로운 공해를 내용으로 하는 전통적 해양질서가 중요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전통 해양질서의 동요는 1958년 제1차 유엔 해양법회의로 이어졌고 해양법에 관한 4개의 제네바협약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sup>38)</sup> 1958년 협약에서 해결하지 못 하였던 영해의 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 제2차 해양법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역시 실패하였다.<sup>39)</sup>

1960년대 들어서서 심해저 광물자원에 대한 법적 문제, 해양환경 보호문제 등과 함께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신생독립국들이 국제사회에 진출하면서 강대국 위주의 해양법체제에 심각한 도전을 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미, 소 양대 진영에서도 해양 전략문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제해협 통항확보 및 개도국의 영해확장 억제 문제를 더 이상 개도국을 무시하고 처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법회의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졌다. 1967년 제22차 유엔총회에서 주유엔 몰타대사인 파르도(Arvid Pardo)가 발언한 연안국 관할권 밖의 심해저 광물자원에 대한 인류 공동유산 선언과 새로운 형태의 국제해양레짐의 수립을 제의함으로써<sup>40)</sup> 해양레짐으로서의 유엔해양법협약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어졌고 파르도의 제의는 즉각적으로 77그룹(G-77)을 비롯한 제3

세계 국가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sup>41)</sup> 1970년 12월 유엔총회는 각 연안국 관할권 범위 밖에 존재하는 심해저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이 합의에 의거해 1973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가 개최되었다.<sup>42)</sup> 150여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뉴욕과 제네바를 오가며 10년간의 협상을 거쳐 1982년 4월 마침내 해양레짐의 근간인 본문 320개 조항과 9개 부속서로 구성된 방대한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어 졌다.<sup>43)</sup> 이 협약은 1982년 12월 서명식에서 119개국이 서명했고 이후 40여개국이 추가 서명함으로써 서명 국가는 159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들 중 60개국이 1993년 11월 16일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1994년 11월 16일 유엔해양법협약이 정식 발효되었다.<sup>44)</sup>

유엔해양법협약은 국제사회 구성국들의 보편적 합의에 의해 지구촌 해양이용의 새로운 법질서가 창설되었다는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해양법협약이 논의되어온 과정에서 나타났던 주지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은, 첫째로, 해양의 군사적 이용에 대해서는 일부 중요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둘째로, 전체 회원국의 합의를 통한 타협안 창출이란 명목 하에서도 여전히 개별국가의 국익과 관련된 정치적 타협 요소(co-op and buy off)가 내재 되어 있다는 점, 셋째로, 심해저 광물자원 같은 주요 핵심문제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타결안 가능성을 연기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넷째로, 최강국인 미국이 유엔해양법체제에 불참하였다는 점, 다섯째로 미국이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조항들이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서 채택되어 졌다는 점, 여섯째로 제3세계 국가들의 영향력 증대와 일부 미 동맹국들의 실리적 태도에 의해 과거 미국이 구가했던 패권국으로서의 영향력 행사에도 분명한 한계가

<sup>37)</sup>자세한 내용은 (이와 정 2001, 20-21) 참조. 국제사법재판소 또한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에서 Trumen 성명이 대륙붕 議題에 관한 실증법적인 시작이었다고 말한다. *ICJ Reports* (1969), pp. 32-33.

<sup>38)</sup>자세한 내용은 (이 1997, 101-102) ; 11UN.GAOR Supp.(No.17), UN.Doc.A/3572 ; (Whiteman 1958, 629-659).

<sup>39)</sup>자세한 내용은 (BSPM-17900-1466-7, 31) 참조.

<sup>40)</sup>1967년 주유엔 몰타대사인 파르도(Pardo)가 심해저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 선언하고 공해자유 원칙이 적용되는 장소로써 심해저를 현 상태로 방치하면 기술이 앞선 선진국들이 이를 독점하고 나아가 심해저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음을 주장한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법협약 채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Dyke 1993, 23-37) 참조.

<sup>41)</sup>자세한 내용은 (이 1997, 108-109) 참조.

<sup>42)</sup>주요 논의 의제는 해협의 통과통항(transit passage) 제도의 채택, 군도제도의 채택,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의 채택, 대륙붕개념의 법적 해석 변화, 공해자유 문제, 심해저 자원관리에 대한 국제관리제도 채택, 해양과학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의무, 해양환경 보호, 제3자적 차원에서의 분쟁해결 제도 도입 등이다.

<sup>43)</sup>합의에 의한 협약 채택이 되지 못하고 미국의 요청으로 투표한 결과 찬성 130국 반대 4국(미국, 이스라엘, 베네수엘라, 터키) 기권 18국(영국, 서독, 소련 및 동구권)으로 채택되어 졌다.

<sup>44)</sup>2006년 현재 총 비준국 수는 149개국이며 한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해양문제와 관련된 60여개의 법률과 시행령 등을 정비하고 있다. 한국은 1996년 9월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해양수산부(연구수행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2002, 204).

드러났다는 점들이다.<sup>45)</sup>

제3세계 국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채택을 두고 이를 유엔을 중심으로 한 범세계적인 해양레짐의 창출로 1945년 유엔 창설 이후로 형성된 국제사회 최대의 기념비적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군축 및 안보관련 레짐, 국제 무역 및 통상 관련 레짐 등과 함께 해양레짐<sup>46)</sup> 또한 개별국가의 국익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힘(권력)에 의한 역동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유엔해양법협약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유엔해양법협약은 과거 수백 년 동안 형성되어 온 전통적 해양 규범들을 수용하고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상이한 주장들을 포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7개 영역, 즉 12해리 영해 폭 확정, 해협에 대한 통과통항, 군도수역 개념의 채택,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신설, 대륙붕 범위의 확장, 심해저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개발 및 이용을 총괄할 국제 해저기구의 설립, 국제 해양 환경보호와 해양 오염방지를 위한 포괄적 체제의 도입 등에 걸쳐 새로운 해양체제를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저변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국가 간 분쟁과 갈등요인들이 상당히 내재해 있다.

이는 다분히 다자간의 협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뚜렷한 지휘자가 없는 유엔 중심의 해양레짐이 갖는 한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해양법협약이 갖는 한계는 1) 17세기부터 형성된 해양관련 국제 규범과 원칙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sup>47)</sup> 2) 해양과 관련된 자원, 통항, 환경, 경제계획 등 다양한 문제영역 사이에서 벌어지는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각 문제 영역에 적용되는 국제 규범과 법체계는 아직 포괄적이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sup>48)</sup> 3) 해양 관련 분쟁 요소 또한 지구적, 지역적, 쌍방 당사국간에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규범 및 법 원칙은 중재재판과 ICJ 및 ITLOS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sup>49)</sup> 4)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선, 후진국간의 기술편차가 심각해 상호간 이익을 둘러싼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5) 수의 횡포<sup>50)</sup>를 주장하며 유엔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명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들의 유엔에 대한 무관심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sup>51)</sup>

이런 유엔해양법협약의 한계는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쟁점영역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자원확보 문제이다 : 연안국의 해역 관할권 확대를 주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원의 확보에 있으며, 국가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원의 확보 문제야말로 해양법협약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영역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제관계 규범은 연안국으로 하여금 영해와 동일한 지리적 범위 안에서만 어업에 관한 독점권을 허용했고 그 범위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3국의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보장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구질서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 연안국의 권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다만 최대 지속생산량(maximum sustainable yield: MSY)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전체 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을 정하고 자국이 조업할 수 없는 잉여분에 대해서만 타국의 어업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2개 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걸쳐 분포하는 참치나 연어 같은 회유성 어족자원의 경우, 국제분쟁의 소지가 크며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으로는 당사국간 협의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당사국간 협의는 대부분 국제기구의 중재로

<sup>45)</sup>자세한 내용은 (김 1987, 464-465) 참조.

<sup>46)</sup>국제관계학 내 대다수의 학자들이 군축과 안보문제, 국제정치경제문제, 해양법문제를 국제사회가 당면한 최대의 현안문제로 보고 있으며 세계 해양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범지구적, 지역적, 국가 간 쌍무적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해양레짐의 국제관계적 특성 또한 국제사회의 구조 및 체제적 성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sup>47)</sup>자세한 내용은 (이와 정 2001, 18-22) 참조.

<sup>48)</sup>예를 들어 일본자위대의 EEZ내에서 국적불명(북한)의 선박 격침 사건과 미국 EP-3 정찰기와 중국전투기와와 충돌사건에서 볼 때, EEZ내 외국함정과 항공기의 비행 및 해양안전에 대한 국제법 적용시각이 모두 자국 위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EEZ내 연안국 권리와 이익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의 해석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 2003, 196-198) 참조.

<sup>49)</sup>EEZ내 발생하고 있는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국제제도도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영유권 분쟁과 영토분쟁의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강제조항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김 2003, 197) 참조.

<sup>50)</sup>유엔분담금의 23%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이나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유엔총회에서의 투표권은 일국 일표제로 동등하다. 현재 유엔재정의 80%가 제3세계 및 개도국에 사용되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제3세계나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분담금을 늘여서 자신들에게 돌아갈 지원이 늘어나도록 수를 앞세운 정책입안을 도모하고 있는데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 1998, 167-174) 참조.

<sup>51)</sup>자세한 내용은 (이와 정 2001, 18-30) 참조.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기구가 행하는 권고 형태의 중재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할 경우 문제해결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진다. 또 국제기구가 재정 또는 운용면에서 몇몇 국가에 의해 조정될 경우 전문성에 입각한 객관적 판단보다는 편파적인 영향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sup>52)</sup> 물론 이러한 경제왕래어족과 고도회유성 어족에 대하여는 1995년의 공해어족보존이행협정<sup>53)</sup> FAO의 후속조치 등이 국제사회 공해어업 통제를 위한 기준으로 제시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자원을 둘러싼 또 다른 핵심영역으로 심해저 광물자원 문제를 들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심해저 자원은 주인이 없는 자원으로 어떤 국가나 민간기업에 의해서도 상업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개도국은 심해저 자원은 인류전체의 공동유산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관리는 국제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국제 해저기구에 의해 수행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은 양편의 입장을 절충하는 형태로 국제 해저기구 산하기관인 국제해저기업을 통해, 국제 공동개발과 국제적 통제 하의 선진국 내 민간기업을 통한 개발이라는 일종의 병행개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심해저 개발체제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선진국에 의한 심해저 기술 이전 의무에 대한 부담, 국제 해저기구 설립 및 초기 운영 비용에 대한 과도한 부담,<sup>54)</sup> 중앙통제식으로 행해지는 심해저 자원 생산체제의 모순성, 투자 및 재정기여도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부가 가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유엔이 직접 나서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심해저 이행협정을 1994년 채택하고 선진국들이 원하는 형태의 시장경제원칙에 바탕을 둔 개발체제로의 전환에 합의케 함으로써, 심해저 자원을 둘러싼 국제갈등을 해결하려는 실마리를 찾았지만 심해저광업 문제를 전담할 국제 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의 36개 이사국 선정을 놓고 선, 후진국간 첨예한 입장대립을 벌인 바 있다.<sup>55)</sup>

두 번째 쟁점은 통항문제이다 : 오늘날 세계무역의 95% 이상이 해양을 통해 이뤄질 만큼, 물자교류의 주된 통로가 되는 안전한 해로(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군사적 측면에서도 군함의 자유로운 이동 여부가 말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통항문제의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국제사회의 갈등 요인도 커지며,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범위가 확대되면 될수록 해양이용도가 큰 선진국의 항해권이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내 무해통항 인정,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권 부여, 군도수역에서의 통과통항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연안국들이 과도한 영해 기점의 설정을 통해 관할권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정치적 이유로 말라카(Malacca), 호르무즈(Hormuz), 지브롤터(Gibraltar) 등과 같은 전략상으로 중요한 국제해협들을 봉쇄<sup>56)</sup>하는 등 여전히 통항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크다. 그밖에 무해통항권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보호나 국가안보를 내세워 군함 등 특정선박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시행할 경우,<sup>57)</sup> 이로 인한 심각한 국제적 분쟁이 야기될 수도

<sup>52)</sup>국제기구의 재정기여도는 단일국가가 총재정의 25% 이상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정 기여도에 따라서 사무국 직원 할당, 가중투표제, 이사회나 집행위원회의 정족수가 달라지며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지원국 국익에 맞는 특정목적용 정해 이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규정한 신탁기금(trust fund) 등이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최대 재정지원국의 영향력이 국제기구의 운용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 1998, 180-187) 참조.

<sup>53)</sup>공해어족보존이행협정의 원래 명칭은 “경제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1982년 12월 10일 유엔해양법협약 관련조항의 이행협정”이며, 1995년 8월 4일 채택되었다. 2001년 12월 11일 발효되었으며, 2006년 9월 기준으로 59개국이 서명하고 60개국이 비준 가입하였다.

<sup>54)</sup>2005-2006년 2년간 국제해저기구의 예산은 약 1천만 달러 정도 된다. 미국의 경우 현재 대중 군사적 봉쇄전략 일환으로 몽고, 베트남,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러시아 연방국가, 인도 등지에 수억 달러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운영예산에 대한 부담 보다는 현실적인 관심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sup>55)</sup>자세한 내용은 (김 2004, 121-124) 참조.

<sup>56)</sup>일례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상사고 방지를 위해 말라카해협을 이용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기존의 항로 대신 순다해협(Sunda Strait)과 롬보크해협(Lombok Strait) 등 3개 우회해로를 지정하고 있어 말라카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 일본, 호주 등으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 2004, 32) 참조.

<sup>57)</sup>군함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2장 제3절(영해에서의 무해통항)의 제1권이 규정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및 제17조가 규정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은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는 규정에서 알 수 있다. 제19조 제1항 역시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침해하지 않는 한 무해이며, 이러한 통항은 본 협약 및 기타 국제법에 따라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외국선박의 통항이 연안국에 유해한 행위의 유형 12개를 열거하고 있다. 결국 유엔해양법협약은 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게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문제는 연안국이 사전허가 또는 통고요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사전통고는 사전허가와 달리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통고제와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연구수행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2002, 130).

있다.

세 번째 쟁점은 해양환경보호 문제이다 : 세계 각국의 해양정책은 나름대로의 해양환경 오염 방지책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해양환경오염의 국제성과 광역성이 라는 특성 때문에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긍정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문제는 해양 환경보호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고 지역, 나아가 국제 사회 전반이 다 같이 협력해야만 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법규제정이나 각종 규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국제적 조율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해양 환경 오염에 대한 국제적 규범과 규칙 제정을 놓고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갈등 요인이 대두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후진국의 경우 현재 이뤄져 있는 해양환경구조에 대한 불평등성을 강조하며, 해양 환경오염에 대한 차별적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을 강조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선진 해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입각한 환경기준을 강조해 환경오염 기준에 따른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거나 불리한 규제 자체를 아예 무시해 버린다면, 이는 개도국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당한 규제장벽이 새로 생기거나 개도국의 이해가 완전히 무시되는 현상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국제법규나 국제 기준에 맞추어 해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또는 당사국 간 협상을 통해 통합적인 국제법규 및 기준을 만들도록 중용하고 있지만, 국가 간 해양 환경오염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가 국제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네 번째 쟁점은 경계획정 문제이다 :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인해 연안국은 최소 200해리 관할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는 대부분의 인접 및 대항국가간 해양경계획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였다. 더구나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하여 “당사국간의 합의”로 ICJ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형평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나,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경계획정의 실질적인 지도효과에는 의미가 없다. 이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관련 당사국이 여하한의 획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문제 역시 여전히 각국간의 협약에 대

한 해석과 관행의 누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sup>58)</sup> 현재 해양경계획정을 둘러싼 정확한 수량은 확정하기 어려우나, 학자들의 통계로 볼 때 세계적으로 약 376-400여 경계획정 문제가 잠재하고 있으며, 이중 약 1/3(약 140개-170개)이 전부 혹은 일부 해결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59)</sup> 더구나 대부분의 해양경계획정이 당사국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는 것<sup>60)</sup> 역시 해양법협약의 해양경계획정 해결시스템 흡결이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관련 당사국은 자국의 최대이익(자원, 관할권등의 제요소) 확보를 위해 획정 원칙과 입장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즉, 각국이 해양 경계획정시 각국이 주장하거나 고려하는 요소는 해안선의 형태, 지리적 요인, 해저지형, 지질학적 특성, 역사적 이용도, 분쟁지역 관련국에 대한 경제적 상호의존도 등, 대부분 자국 중심적이고 공통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빈번한 국가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sup>61)</sup> 특히 해양 경계문제로 인한 영토분쟁의 경우는 분쟁 당사국간 심각한 정치적 대립의 양상으로 발전해 긴박한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 5. 결론: 해양레짐으로서의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가설적 전망

존센(Christer Jonsson)은 국제레짐이 다루고 있는 쟁점영역(issue area)의 성격에 따라 국제사회내에서의 역할을 구분 짓는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쟁점영역이 기술적으로 복잡하면 할수록 국제레짐은 그 전문성으로 인해 주권국가를 포함한 그 밖의 행위자에게 보다 큰 잠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국가안보와 결부된 쟁점영역에서는 그만큼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둘째로, 쟁점영역을 둘러싸고 몇몇 특정 국가들에 의해 가치가 배분될 경우, 국제레짐의 역할 또한 그만큼 축소된다. 셋째로, 쟁점영역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의 성격이 개방적(open-ended)일수록 국제레짐의 역할도 강화된다. 넷째로, 쟁점영역이 명확하고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이를 인정할 때 국제레짐의 역할도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62)</sup>

존센의 가설에 따르면 해양레짐으로서의 유엔해양법협약은 기술적인 전문영역이 확실하고, 다자간의 협력을 모색하며, 쟁점영역이 개방적이며, 이를 모든 회원국이 명확

<sup>58)</sup>자세한 내용은 (梁 2006, 77-78) 참조.

<sup>59)</sup>자세한 내용은 (Smith, R.W. 1982, 1-22) ; (Prescott, J.R.V. 1985, 5.2-5.4).

<sup>60)</sup>해양경계 획정에 따른 상세한 이론 및 사례 연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Chamey 1984, 582-606) 참조.

<sup>61)</sup>자세한 내용은 (김 2004, 80-84) 참조.

<sup>62)</sup>자세한 내용은 (Jonsson 1986, 39-57) 참조.

하게 인식하고 있음으로 국제레짐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결국 국제레짐이 활성화되어 레짐의 자율성이 강화되면 필수로, 구성 회원국의 주권국으로서의 자율성은 그만큼 떨어지는 데 문제가 있다. 국제레짐의 정책결정이 주권 국가의 권위를 능가하는 권위를 획득한다면, 국익을 앞세운 개별국가들의 레짐 참여가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 만약 국제레짐이 회원국가간 협상력을 증진시켜주고, 협상 비용을 줄여주며, 개별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에도 집단적인 정당성(collective legitimacy)을 부여해 줄 수 있으면,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적 지지를 유도해 낼 수 있어 이를 기반으로 회원국의 레짐 내에서의 자율성 또한 높아지는 호선적(co-optive)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이는 다시 국제레짐을 강화시켜 레짐 내 쟁점영역에 대한 국가 간 갈등과 분쟁요소를 줄여주는 이상적인 형태의 상호관계를 도출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요원하다. 전후 국제레짐과 주권국가의 관계에서 레짐의 자율성 강화가 회원국(주권국가)의 자율성 강화를 가져다 준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국제레짐의 효율성은 과거 미-소간의 양극체제에서 또는 탈냉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레짐을 통한 패권적 지위의 활용면에서, 다시 말해 지도력을 갖춘 국가에 의해 레짐이 창출되고, 유지, 운영되어 나갈 때에, 효율성과 안정성 면에서 훨씬 비교우위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자발형과 협상형 국제레짐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해양레짐으로서의 유엔해양법협약은 회원국 간 신뢰할 수 있는 공고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한, 국제레짐으로서의 구심력을 좀처럼 발휘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국제레짐을 유지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변수인 국제사회에서의 권력(힘), 협상능력, 기술능력과 전문성 등의 모든 면에서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훨씬 뒤쳐져 있기 때문에, 개도국의 경제주권 주장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은 그 기반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레짐 유지를 위한 세 가지 변수를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국익의 필요에 따라서 개도국과 사항별 혹은 분야별 협조 혹은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해양법협약 체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sup>63)</sup>

GATT체제에 대해 G-77을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들이

설립했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선진국들의 탈퇴로 기능을 상실했으며, 개도국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던 유엔환경계획(UNEP)도 선진국들이 주관이 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내에 지속개발위원회(CSD)가 만들어 지면서 영향력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이러한 견해를 반증한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경우 역시 미국, 영국, 호주의 탈퇴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sup>64)</sup>

그러나 이러한 레짐과 국제사회 내에서의 역할이라는 것 역시 예외적 사례가 있다는 것 역시 주의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제기구가 미국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염려 하에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 조건부적 승인을 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국익에 따라서 언제라도 탈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sup>65)</sup> 그러나 WTO체제가 과거 GATT와는 달리 거의 모든 무역관련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과 WTO가 미국의 301조 조사, EU의 TBR 조사 등 일방적 무역규제 구제제도 등의 일방적 보복조치를 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상품교역, 서비스 교역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WTO 분쟁 제소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이러한 가설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sup>66)</sup> 이 외에, 심해저제도도 기존 국제해양법의 기본원칙인 공해자유의 원칙을 부인하고 공해 해저면에 부존되어 있는 광물자원을 공동유산으로 규정하여 자유경쟁체제가 아닌 국제기구에 의한 통제개발체제를 근간으로 설정함으로써 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노출하였다. 그러나 준비위원회와 비공식협상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비롯한 이해당사국간의 국가간 이해조정을 통해, 심해저제도에 불만을 갖고 협약자체를 거부하는 선진국의 불만을 대부분 해소하였다. 비록 미국의 유엔해양법협약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해저 기구에 대한 중요 의사결정과 재정 결정 사항에 대한 거부권 부여는 여전히 미국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가능성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단점을 가지고는 있으나,<sup>67)</sup> 결과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은 범지구적인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았으며, 그 핵심규정으로 평가되는 심해저제도의 경우 협약상의 제도들이 이행협정에 의해 많은 부분 수정되어 성공적인 국제제도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sup>68)</sup>

그러나 레짐이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제 해양레짐

<sup>63)</sup>자세한 내용은 (Hurrell and Kingsbury 1992, 1-47) 참조.

<sup>64)</sup>자세한 내용은 (박 1998, 101-114) 참조.

<sup>65)</sup>자세한 내용은 (The Economist 1991.1.28. Throwing sand in the gears).

<sup>66)</sup>2000년 10월 기준으로 WTO 분쟁 제소국별 현황을 보면, 총 제소 150건 중, 선진국 150건, 개도국 50건, 선진국·개도국 공동제소 10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윤상수 2004, 116).

<sup>67)</sup>해양수산개발원 2004(161-171).

<sup>68)</sup>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연구수행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2002, 264-276).

에 대한 변화없이 현재의 운영체제가 지속된다면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몇 가지 가설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협의사항들이 지나치게 광대하고 또한 많은 국가들이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 국가 간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협약 자체가 과도하게 분열적이고 유동적인 시스템으로 만족하는 한계성을 가질 수 있다. 둘째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비군사적 활동을 규제하는 데 연안 및 해협국가간 이해를 조정하면서 연안국가와 해운국가 간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의 달성 또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상황이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이는 분쟁의 성격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 혹은 국가이익에 따른 이합집산이라는 쌍방간 분열요소로 확대될 수도 있다. 셋째로, 국가이익 및 갈등과 직접적 관련을 가지는 요소인 어업권과 석유관할권 문제가 일반협약을 통해 해결되기에는 많은 난점과 조건의 선결이 요구되는 만큼, 레짐 차원을 벗어나 쌍방간 또는 지역협정으로 해결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넷째로, 전략요충지인 해협을 끼고 있는 국가들과의 무해통항문제는 정치적 상황에 민감한 쌍방 간의 잠정협정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강대국의 이해로 인해 협약 자체가 무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해양레짐의 변화는 내부적 갈등과 외부적 충격에 의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UN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혹은 이익집단들은 각각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국제기구 혹은 시스템 창설을 요구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관련 문제 또한 이러한 시스템으로 흡수하여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또 UN 중심의 해양레짐으로 인해 자국의 국익이 크게 손상될 경우,<sup>69)</sup> 동일한 이해를 가지는 국가들은 국익을 해치는 기존 해양법협약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국제레짐을 창설하여, 기존 해양레짐에 대한 기득권을 무시하고 강대국 국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구심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 사 사

본 논문은 한국해양연구원 정책연구실의 배려로 이뤄질 수 있었으며, 특히 권문상 박사님, 김종만 박사님의 지원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초고를 세밀히 교정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참고문헌

- 김달중. 1987. 한국과 해로안보. 법문사, 서울. 745 p.
- 김택기. 2003.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군사 및 군사정보활동에 관한 고찰. *Strategy*, 21, 6(2), 189-217.
- 김종현. 2004. 해양과 국제정치. 부산외대출판부, 부산. 344 p.
- 박재영. 1998. 국제기구정부론. 박영사, 서울. 610 p.
- 박재영. 1996. 국제정치패러다임. 법문사, 서울. 574 p.
- 박치영. 1998. 유엔정치론. 법문사, 서울. p. 1-592.
- 윤상수. 2004.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 절차. *나라경제*, p. 115-117.
- 이경호, 정승건. 2001. 바다와 국가의 정책. 학현사, 서울. 597 p.
- 이춘건. 1997. 한국의 해양문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서울. 368 p.
- 이종찬. 2004. 자주적 힘과 원고근공의 지혜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끌어안아야. *World Village*, 7(겨울호), 20-24.
- 해양수산부(연구수행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2002. 유엔해양법협약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분야별 전략수립 연구, 31.
- 해양수산개발원. 2004. 미국의 유엔해양법 가입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서울. p. 161-171.
- 梁熙喆. 2006. 從國際海洋劃界原則和實踐論中國EEZ與大陸架劃界問題 : 以黃海和東中國海劃界問題爲中心. 臺灣大學校博士學位論文. p. 77-78.
- Borgese, E.M. 1993. The Process of Creating an International Ocean Regime to Protect the Ocean's Resources. p. 23-37. In: *Freedom for the Sea in the 21st Century: Ocean Governance and Environmental Harmony*. ed. by Jon M. Van Dyke. Greenpeace Inc. Press, Washington D.C.
- Baldwin, D.A. 1979. Power Analysis and World Politics: New Trends versus Old Tendencies. *World Polit.*, 31(2), 161-194.
- Charney, J.I. 1984. Ocean Boundaries Between Nations. *Int. Law*, 78(2), 582-606.
- Charney, J.I. and L.M. Alexander. 1998.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 III. Martinus Nijhoff Publishers. Dordrecht/Boston/London.
- Cox, R.W. 1987. Production, Power, and World Order. Columbia Univ. Press, New York. 486 p.
- Haggard, S.D. and B.A. Simmons. 1987. Theories of International Regimes. *Int. Organ.*, 41(3), 491-517.
- Hurrell, A. and B. Kingsbury. 1992.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Environment: An Introduction. p. 1-47.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Environment*. ed. by A.

<sup>69)</sup>현재 미국을 제외한 지구촌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심해저개발 문제를 제외하고는 별 다른 불만을 품고 있지 않고 상당수의 미국 요구사항들이 수용되었지만, 유엔해양법협약 가입문제를 놓고 미 의회에서 여러 차례 내부적 진통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패권적 이익에 해양법협약이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미국 중심의 새로운 구심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 Hurrell and B. Kingsbury. Oxford Univ. Press, Oxford.
- Jonsson, C. 1986. Interorganizational Theory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 Stud. Quart.*, 30(1), 33-54.
- Keohane, R.O.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Univ. Press, Princeton. p. 145-156.
- Keohane R.O. and Nye, Jr., J.S. 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Little Brown and Co., Boston. 468 p.
- Krasner, S.D. 1983. *International Regimes*. Cornell Univ. Press, Ithaca. 372 p.
- McGrew, A.G. and P.G. Lewis. 1992. *Global Politics: Globalization and the Nation-State*. Polity Press, Cambridge, 687 p.
- Nye, J.S. 1988.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World Polit.*, 11(2), 235-251.
- Prescott, J.R.V. 1987. *The Maritime Political Boundaries of the World*. Methuen, London, Figure 6.2, 6.4, 7.3, 10.3, 11.3, 12.2, 13.2, 13.3, 13.4, 14.1.
- Smith, R.W. 1982. A Geographical Primer to Maritime Boundary Making. *Ocean Dev. Int. Law*, 12, 1-22.
- Snidal, D. 1985. The Limits of Hegemonic Stability Theory. *Int. Organ.*, 39(2), 579-614.
- Vogler, J. 1992. Regimes and the Global Commons: Space, Atmosphere, and Oceans. p. 128-137. In: *Global Politics: Globalization and the Nation-State*. by A.G. McGrew and P.G. Lewis. Polity Press, Cambridge.
- Waltz, K.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Mass. 754 p.
- Whiteman, M.M. 1958. Conference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Am. J. Int. Law*, 52, 629-659.
- Young, O.R. 1989. *International Cooperation : Building Regimes for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Cornell Univ. Press, Ithaca and London. 548 p.

---

*Received Aug. 23, 2006*

*Accetped Sep. 20, 2006*